

# 강력범죄 수사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연구지도위원〉 서 정 옥

## 第1章 序 論

### 第1節 研究의 目的

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현상과 급속화 되가는 개인주의 사상은 전통적 윤리 규범의 와해 등 사회전체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인간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문제는 가장 큰 문제로 우리앞에 너무 크게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결국 1990년 10월 13일에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그 이후 경찰의 당면 업무는 민생치안으로 총역량을 집중시키는 등 대전환의 계기를 가져왔고 그 중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총력집중하게 되었으며, 또한 제도의 개선과 인력충원은 물론 예산의 뒷받침을 최대한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광역화·홍포화되어가는 범죄현상과 경찰이 효과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진압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그 중 강력범죄진압이야말로 직접 피부에 느껴지는 체감치안에 효과적이고 이를 위한 수사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경찰관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도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뒤를 잡아 당기는 일이 허다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第2節 研究의 內容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경찰업무의 주요 기조가 민생치안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찰조직

은 민행치안의 최일선 조직인 경찰서와 파출소를 대상으로 충원 및 운영체제의 개선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강력범죄를 진압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원되고 움직여지는 경찰관들의 활동이 매끄럽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상황에 대해 검토 건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第2章 搜查活動의 實態와 問題點

### 第1節 現場에서 느껴지는 隘路事項

강력사건 발생 후 시간을 다투는 현장감식 업무부터 현장보존은 물론 현장부근의 인적·물적증거자료 수집 등 다양한 업무가 주·야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도 적절한 수사활동비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목격자는 물론 피의자를 상정할 수 있을 경우는 즉각 검거 활동에 투입되어야 하겠으나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리 쉽게 피의자를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현장에서의 증거물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단서 하나 발견되지 않는 사건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해결되지 않는 사건일수록 고생은 말이 아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느껴지는 눈총이 따갑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침착하게 그리고 열번이라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분으로 꼼꼼히 따져 나가 보아야 한다.

수사활동의 인력의 배분, 임무의 분담, 수사회의, 수사서류 종합과 분석 등은 사건에 따라 다르겠으나 경력과 수사비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 할 때도 많다.

※ 많은 정황들중에 간단히 상기한 이러한 경우 인력동원, 수사비지원 등이 현실에 맞게 뒷받침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 第2節 理想的인 搜查 및 支援方案

사건의 규모, 성질, 언론의 관심도, 사회의 충격을 주는 파렴치한 사건 등에 따라 이상적인 수사 및 지원 방향이 다르겠으나

첫째, 전문인력의 적절한 투입이 중요하며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현장보존에 티끌하나 흐트러짐이 없이 보존되고
- 유능한 감식요원이 투입되어 충분한 감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 참고인, 목격자 등 탐문수사가 즉각 이루어져야 하며
- 피해자 신원파악을 물론 관련 인물에 대한 파악 수사
- 연고선에 대한 확인을 즉시 실시
- 사건 규모에 따라 수사전담반 나아가 수사본부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 수사진행사항을 일목요원하게 정리, 흐름

의 파악과 중요확인사항 점검추진하는 요원의 배치

· 수사지휘의 일원화를 가져야 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사건현장은 사건해결의 보고(보물단지)라고 말한다.

처음부터 이곳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한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너무나도 중요한 단서 및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잘못 다룬다면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사건 미해결의 쓴 맛을 보거나 범인을 검거하고도 기송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둘째, 수사 지원

사건수사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지원이다. 충분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유능한 수사관의 지원은 물론이고 수사비가 발목을 잡아서 곤란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수사비는 사후 보전적 조치가 될 때가 많다. 출장을 가야 할 때 우선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다녀와서 지급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카드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여 수사관들이 이를 휴대하고 필요시 사용하고 사후에 수사보고서 제출과 함께 카드사용내역을 보고케 하는 방안 등이다.

수사비 부족으로 출장을 억제하고 확인절

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추후 돌이킬 수 없는 허점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조수사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으나 지원을 요구받은 관서나 경찰관들이 자기 일도 바쁘다며 적당히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어 사건해결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공조수사지원을 믿을 수 없어 하는 경우가 많아 다시 수사관을 현지 배치 확인하는 일이 있다.

또한 이것은 시간, 인력, 경비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경찰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지휘관의 관심도이다. 사건 발생시 지휘관의 관심도는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전문지식이 없는 지휘관이 미주알, 고주알 따지고 보고를 요구하면 보고를 위한 수사가 되어 오히려 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휘관이 관심을 갖고 수사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수사 지원에 아낌없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일 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수사관들을 사기 충전하고 꼭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게 한다.

야간 잠복 등 밤샘 고생을 하며 출장을 몇 날며칠 방방곡곡을 다니고 고생을 하여도 지휘관이 무관심하면 명예를 먹고 사는 일선 수사관들은 힘이 빠지게 마련이다.

지휘관이 밤샘 잠복근무를 같이 한 것과 다름없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사건해결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第3章 結論 - 評價 및 政策建議

강력범죄 수사 및 지원은

첫째, 수사체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즉 현장 중심으로 일선 수사관들이 일할 수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사지휘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급기관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수사활동의 지휘 체제를 무시하고 이것 저것 지시하고 보고요구 등은 하지 않아야 한다. 수사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경비의 낭비는 물론 보고를 위한 수사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

셋째, 현장감식의 중요성의 인식이다.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장초동감식임을 강조하면서도 감식요원에 대한 처우는 물론 사기진작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 일선 수사지휘 간부가 감식에 대한 충분한 교양을 갖추어야만 사건해결의 실

마리를 풀 수 있다.

넷째, 일선 강력범죄 수사에 당하는 경찰관들은 모든 시간과 정력을 이곳에 총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모든면에서 타부서 근무자들보다 승진시험준비 등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전하기 위한 특진 등 제도는 있으나 그때그때 지휘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연구로 그 잣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사기진작과 더불어 사건해결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수사지원체제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후 보전이 아니라 사전적 활동의 지원을 말한다. 인적, 물적지원은 물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땀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